

업 무 계 약 서

고객사 : 기업명 기재

헤드헌팅회사 : 헤드헌팅 회사명 기재

20**. *. *. (계약일 기재)

제 3 조 보증(대체 인재 추천과 수수료 환급) 및 면책

1 항 : 보증기간, 보증사유, 대체 인재 추천)

[헤드헌팅 회사]를 통해 채용된 후보자가 출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[헤드헌팅 회사]는 [고객사]의 요청에 따라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신속히 대체 인재를 추천한다.

- ① 본인이 임의로 퇴사한 경우
- ② 이력서나 입사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- ③ [고객사]의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 또는 면직된 경우

2항 : 수수료 환급1

제1항에 의하여 [고객사]가 대체 인재 추천 요청하였으나 추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거나 추천 진행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[고객사] 및 [헤드헌팅회사]는 상대방에 대하여 수수료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에 [헤드헌팅회사]는 최초 지급받은 수수료중에서 30%를 기초조사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간 중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[고객사]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.

환급 수수료 : (최초 지급 수수료 - 기초조사비)(90일 - 근무일) / 90일

3항 : 수수료 환급2

[고객사]는 내부사정 등으로 대체 인재 추천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[헤드헌팅 회사]에 대체 인재 추천에 갈음하여 즉시 수수료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수수료 환급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4항 : 보증의 종료

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[헤드헌팅회사]의 [고객사]에 대한 보증의무는 종료된다

- ① 제1항에 의하여 대체 추천된 후보자가 입사한 경우
- ②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[고객사]에 수수료를 환급한 경우

5항 : 고객사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

채용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[헤드헌팅 회사]는 [고객사]에 대하여 대체 인재 추천 및 수수료 환급의 의무가 없다.

- ① [고객사]의 구조조정으로 부서정리,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권유로 퇴사한 경우
- ② [고객사]의 급여 연체, 부도 및 불미스러운 일(예 : 성추행) 등으로 퇴사한 경우
- ③ [고객사]가 후보자와 합의한 급여, 직책, 직위, 업무 및 기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등 후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

제 4 조 수수료

- 1 항 : 수수료는 총 연봉의 20% 로 정한다.(부가가치세 별도)
(연봉은 입사자가 첫 1년간에 받는 모든 현금급여 및 상여금,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)
- 2 항 : [고객사]는 채용된 후보자의 출근 후 14일 이내에 [헤드헌팅 회사]에게 일시 현금으로 지급한다.
- 3 항 : 급여 또는 수수료가 원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될 경우, 청구서 발행 당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.

제 5 조 후보자 보호 규정

- 1 항 : [헤드헌팅 회사]는 추천서에 후보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및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 전까지 [고객사]는 위 사항들을 후보자에게 직,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다.
- 2 항 : [고객사]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임직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.
- 3 항 : [고객사]는 [헤드헌팅 회사]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채용확정 이전에 [헤드헌팅 회사]를 통하지 않고 직,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며, 입사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후보자의 채용진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다.
- 4 항 : 채용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관한 사항 또한 관련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다.
- 5 항 : [고객사]는 [헤드헌팅 회사]로부터 추천 받아 채용한 자에게 [고객사]가 [헤드헌팅 회사]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.
- 6 항 : [헤드헌팅 회사]는 추천 후보자에게 일체의 보수 또는 사례를 청구하지 않는다.

고객사:

주소 :

대표이사 (인)

헤드헌팅사:

주소:

대표이사 (인)

20**년 *월 *일 (계약일 기재)